

미원 학술상 규정

시행: 2022. 12. 0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미원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시상대상) 학술상은 경희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전공 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3 조(학술상의 종류)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2. 우수상
3. 장려상

제 4 조(학술상의 결정) 학술상의 수상자 및 종류는 학술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① 학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상의 기본 운영계획
2. 수상자의 수와 포상액
3. 학술상 심사위원회 추천
4. 학술상 심사기준
5. 학술상 심사 결과
6. 기타 학술상 시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회의와 의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학술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전공영역별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관련 전공 분야에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심사의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기한을 정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심사를 행하며 심사과정에 지득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평결) 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심의한 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업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상자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대상) 학술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또는 저서를 그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편저, 번역, 자료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구비서류) ① 학술상의 수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전공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처(산학협력처)를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주요 경력 및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주요 저작물 목록(소정양식) 1부
4. 심사대상 저작물 개요(소정양식) 1부
5. 심사용 추천대상 저작물 5부

제13조 (추천기간) 학술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한은 매년 3월 10일로 한다.

제14조 (시상일) 학술상의 수여는 경희대학교 개교기념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시상) 학술상의 시상은 상패(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16조 (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